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3. 20.(수)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9차, 제11차 및 제1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1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안건 중 <의결안건 가>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9-14-057~071)

####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건은 피심인 중 3개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조사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1> 의결주문입니다.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피심인이 온라인 영업을 하면서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에 대한 실태점검, 사실조사, 피심인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기간은 '18년도 7월 언론 보도내용, 실태점검 결과 및 조사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18년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이동통신 온라인 영업부문 가입자 415,093건 중 80,913건입니다. 온라인 영업행태가 복잡·다양하여 유형별 샘플링을 하지 않았고, 가입실적이 높은 유통점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대상 유통점 개수는 총 35개로 대리점이 21개, 판매점이 14개입니다. 다음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과 관련하여 35개 유통점에서 64,183명에 대해 평균 206,633원을 초과

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입니다. 32개 유통점 34,411건에서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입니다. 32개 유통점 13,438건에서 가입유형 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장려금 지시·지급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가요금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입니다. 피심인②, ③과 관련 각각 2개, 3개의 유통점 1,186건, 1,317건에서 고가요금제 6만원 이상 요금제입니다. 고가요금제 판매와 관련해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정요금제 부당한 권유조건 부과행위입니다. 피심인②, ③은 각각 2개, 3개 유통점에 대해 장려금을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각각 144,568원, 55,236원을 더 차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관련 유통점에서 저가요금제 판매에 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고 요금제 하향 변경 시 장려금을 환수하는 조건을 제안하는 등 부당하게 가입을 권유하는 조건을 부과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위반행위로는 1개 판매점에서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가 확인되었고, 1개 대리점에서는 위탁 판매점별 장려금 거래내역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위법성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등에서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초과 지급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통사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에 대해서는 35개 유통점이 다수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유통점 다수에서 상당한 비율로 위반이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인 이통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과 관련해서 32개 유통점에서 차별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제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유통점의 위반행위가 32개 유통점에서 상당한 비율로 드러난 점을 볼 때 이통사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한 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고가요금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건은 피심인②, ③ 관련 각각 2개, 3개 유통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통사가 위반 유통점 간의 관계가 전속대리점 관계이고 부당판매가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와 관련해서는 32개 유통점에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특정된 사례 중에서 이통사가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30만원 초과하여 지급하겠다고 지시한 건이 13,438건에 해당되고, 이것은 피심인이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도한 행위으로써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요금제 부당한 권유 조건 부과입니다. 피심인②, ③ 관련 일부 유통점에서 각각 144,000원, 55,000원의 장려금을 더 차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통점에서 저가요금제 판매 제한, 고가요금제 하향 변경 시 장려금 환수 등 부당 조건을 제안토록 한 것은 고가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는 조건을 정한 행위으로써 법 제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개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개 대리점이 장려금 거래내역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법 제22조제4항제1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사결과와 위법성 판단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시정조치를 보고받기 전에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사업자 측 이통 3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 3사 의견진술인 입장)

세 분 멀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년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19년 1월 30일 귀사의 시정조치안을 통지하였고, 이동통신 3사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당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정책협력실장이신 권영상 님 맞습니까?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주식회사 케이티 경쟁정책담당이신 이영호 님 맞습니까?

○ 이영호 (주)케이티 통신경쟁담당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이신 김윤호 님 맞습니까?

○ 김윤호 (주)엘지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럼 먼저, 피심인 이동통신 3사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서 이번 시정조치안과 관련해 5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순서에 따라 차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안녕하십니까? 에스케이텔레콤 정책협력실장 권영상입니다. 먼저 금번 심결에서 시정조치를 받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작년 초부터 단말기

유통법 준수를 위해 선도적인 시장 안정화를 선언하고 이로 인해 일정 부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차별적인 장려금을 활용한 일부 유통망의 실적 집중, 그리고 불법 온라인 상시 과열과 유통점 간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금번 심결 이후로 발생하는 시장 과열과 유통망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이용자 차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번 사실조사의 발단이 되었던 온라인 영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시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이 판매시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15일 체결된 이동통신시장 상생협약의 핵심 안건인 유통망의 적정 수익 보장과 차별적 장려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성실히 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온라인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성실히 준비하고, 향후 단말기유통법의 준수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5G 상용화를 위해서 통신사업자와 단말 제조업체 그리고 장비 제조업체, 유통망까지 같이 철야작업을 하면서 국가적 과제인 5G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까지 잘 헤라해 주셔서 저희 시정조치안에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영호 (주)케이티 통신경쟁담당

- 안녕하십니까? KT 이영호 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먼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노력으로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도 감소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 2018년 이동통신시장은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과 이동통신 3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어느 해보다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라인 영업채널에서 불법 지원금 지급 등 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부분이 금번 사실조사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처에서 시정조치안에 적시한 사실행위, 위법성 판단, 시정조치안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합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심에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4~5%에 불과한 온라인 영업 채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본질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저희 회사의 온라인 영업 채널의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등 법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가요금제 부당 유도 행위와 관련해서 사실조사를 실시한 유통점 중 단지 2개의 유통점에서만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건수 역시 1,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부 유통점의 이러한 고가요금제의 부당 유도 행위에 대한 회사가 법상 주의 의무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이동통신시장의 상황과 온라인 영업 채널이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신규모집금지는 시정명령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5G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금번 시정명령에서 신규모집금지는 제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 회사는 법 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5G 활성화를 선도하여 이용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 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윤호 상무님.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

- 엘지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김윤호입니다. 먼저 저희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번 온라인 영업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받게 된 점에 대해서 회사를 대표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시정조치안에서 지적하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받은 즉시 사내와 모든 유통망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SNS, 밴드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저번에 지적 받은 판매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전승낙제 게시 등 조치를 즉시 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시정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최근 전체 이동통신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과 온라인 영업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방통위 사무국의 노력으로 이번 조사한 온라인 영업을 과거에 달리 안정되었고 최근에는 핀셋 모니터링 제도 도입으로 효과적인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저희 노력과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가 4월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점에서 5G 망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LTE 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5G에서도 VR/AR, 골프, 아이돌 라이브, 프로야구 등 콘텐츠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앞으로 본원적 경쟁인 요금과 품질,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정조치안의 위반사항에 관한 첫 번째 심결 사례이고, 당사가 스스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시어 징벌적 처분을 하시기 보다는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처분 시정조치 건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저에게 의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충분히 사전에 의견도 많이 들었고, 저희 조사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3사 모두 다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의견진술인 있음) 그리고 KT와 LGU+는 고가요금제 권유 조건 부과로 위법한 것, 이 부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의견진술인 있음)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견진술인 있음)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사업자 의견청취 때 LGU+는 고가요금제가 저가요금제보다 평균 30,000원, 또는 55,000원의 장려금이 추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통점들의 부당영업 방지를 위해 저가요금제에도 장려금은 지급하고 있고, 3개월 이내 요금제 변경 시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요금제 차이에 따른 정산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무처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

- 예.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금 이통3사에서 다 같이 의견을 주신 것 중 공통점을 보니까 가이드라인 30만원선을 낮춰 주면 판매점과 유통점에서 부당하게 차별지원금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다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30만원을 하향으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다 같이 주셨는데 우선 대표로 SKT 상무님이 어떻게 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책정 운영되고 있는 30만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불법지원금으로 전용되어서 페이백이 발생한 경우가 이번에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통사만이 그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동통신유통협회, 판매점협의회, 집단상가협의회와 같이 논의해 온 상생협의회에서도 가이드라인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생존단가를 보장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불법 페이백으로 전용할 수 있는,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없어지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조정된다고 해서 100%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별적인 수위나 전체적인 양, 위반행위의 숫자에 있어서는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사무처와 같이 논의해서 개선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금 이통 3사 간 아까 말씀하신 상생협의회, 그것이 상설기구로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작년 10월부터 실무회의, 임원회의를 계속 거쳐 왔었고 초반에 굉장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입장차가 많았고 초반에 동상이몽 형태로 출발했는데 상호 간의 어려움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서로 많은 부분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통망의 어려움도 해소해 드리고 이통사도 본원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게끔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의하였고, 그에 대해페이백을 중단하자, 그리고 차별적 장려금 행위도 중단하고 생존단가도 보장하면서 상생협의를 찾자고 큰 틀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아마 이 심결이 끝나면 바로 실무협의회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안 보는 것은 아니고 계속 상호 어려운 점과 보충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 김석진 부위원장

- 어차피 유통점에 대해 그런 차별적인 지급을 하지 말도록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 이통사 쪽 대리점에서 그렇게 페이백을 준다면 다른 영업점도 마찬가지로 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마케팅 전략들인데 3사가 영업의 담합행위만 아니라면 서로 상생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열 영업도 피하고, 또 차별적인 행위가 없어져야지 이것이 불법·탈법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돌아오는 돈이 적으니까 소비자 후생이 그만큼 뚝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 30만원을 하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3사가 다 같이 그런 과열영업을 피하고, 또 불법·탈법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다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생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어느 한쪽에서 반칙을 하면서 틀을 깨버리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구에 대해 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좀 더 협의를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큰 틀에서는 3사가 노력해 주셔서 상당 부분 시장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위반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은 3사가 더 노력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것 3사가 마찬가지로 사전승낙서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위반된다고 적시가 되는 것은 3사가 부끄러워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LGU+는 왜 한 군데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

- 저희가 조사할 때 제가 입회를 못 해서 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온라인 대리점에서 오해를 하고 법·제도를 잘 이해 못 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사실조사는 정부기관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인데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해당 대리점, 판매점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특별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

-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차피 대리점이 제출하지 않도록 저희 본사에 있는 전산 D/B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리점이 그렇게 해도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

-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재발되지 않도록 만약에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

- 예.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식을 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이통 3사, 유통망 관련된 단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해서 상생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 시장 내에서 핀셋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이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통 3사의 잦은 1일 정책 변경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번 심결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영업활동을 하겠다고 하시고, 또 유통망과의 상생협력 그리고 이용자 피해 사전예방 이런 것들을 약속한 것들은 상당히 잘하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협약식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1일 정책 변경을 자제하기로 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려금 가이드라인 30만원 하향 필요성도 말씀하셨지만 장려금 정책,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이통 3사가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판매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을 과열시키고, 또 법을 위반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3사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상생협약식에서 약속하셨던 이 부분, 실제 시정명령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짧게 각 사별로 입장들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시지요.

####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두 사업자만의 노력으로는 경쟁이 심하다 보니 중간에 하다가 좌절하다가 좌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번 상생협약식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도 유통 관련된 모든 플레이어들이 참석해서 합의를 이루었고 개선하고자 마음을 맞췄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외부에 공표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협약식까지 이르게 되었고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된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 ○ 이영호 (주)케이티 통신경쟁담당

- KT의 이영호입니다. 저희가 상생협약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의·감독의 의무를 강화하는 부분과 상대적으로 유통망들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환으로 아까 SKT 권영상 실장이 말한 것처럼 이동통신 시장이 기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장려금은 여전히 MNP 중심으로 정책이 가다 보니 저희 내부적으로는 MNP의 장려금을 낮추면서 기변이나 신규의 장려금을 조금 올리면서 유통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하신 것처럼 잦은 정책 변경이 결국은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영업부서에서도 정책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유통협의체와 실무협의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그것을 회사가 책임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윤호 (주)엘지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

- LGU+도 상생협약식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생협약서를 하면 시장이 축소되고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중소유통망들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핀셋규제를 통해 전체 위반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려운 유통망까지 영향이 덜 가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핀셋규제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된 것이 조그마한 대리점에 장려금을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주자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논의를 통해 협의체가 잘 운영되어서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이통 3사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들께서 공개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상생협약식에서 협약을 맺었던 내용을 잘 지키면서 영업활동을 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자 다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의견진술인 있음)

####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 혹시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오늘 출석한 피심인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상 에스케이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피심인 측 의견진술인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 3사 의견진술인 퇴장)

이어서 <의결안건 가>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안건 11페이지 <4>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피심인①, ②, ③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시정명령으로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①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②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③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④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를 명령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신규모집금지와 관련해서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가 피심인 ①, ②, ③별로 각각 4회, 4회, 5회째 반복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규모집금지 적용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피심인①, ②, ③의 온라인 영업채널에 대하여 온라인 영업의 특성상 위반행위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7일간 신규모집금지를 부과하는 안을 <제1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모집금지를 부과할 경우, 4월 중순 이후 5G 단말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초기 5G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국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모집금지를 제외하는 안을 <제2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심인①, ②, ③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한 행위, 그리고 피심인 관련 유통점이 법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과 관련한 관리책임에 대해 위반행위 A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피심인②, ③이 법 제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한 행위 및 피심인 관련 유통점이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을 묶어서 위반행위 B로 각각 정의하였습니다. 이 2개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고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여 병과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위반행위 A, B에 대해 각각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고 정액기준금액을 적용하는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정액기준금액의 경우에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는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3억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위반행위 A에 대하여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율을 고려하여 피심인 ①에게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 7억 5,000만원, 피심인②에게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억 7,000만원, 피심인③에게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6억 1,000만원을 산정하고, 피심인②, ③의 위반행위 B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하여 각각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1안>으로 잡았고, 경미한 위반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를 제외하는 안을 <제2안>으로 하여 복수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수적 가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기준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정액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횡수부터 기준금액의 20%씩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피심인①, ②, ③에 대해 각각 20%, 20%, 40% 위반에 따른 가중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적 가중입니다. 조사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2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심인①, ②, ③은 각각 현장조사 기간 중 시장 과열 이유로 주간 집중모니터링 대상에 각각 3회, 3회, 4회에 걸쳐 지정되는 등 추가적 가중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온라인시장이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불과하여 모니터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심인②, ③의 제출의견을 수용하여 추가적 가중사유 적용을 제외하는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징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심인①은 9억 7,500만원, 피심인②는 <제1안> 8억 5,100만원, <제2안> 7억 4,100만원, 피심인③은 <제1안> 10억 2,500만원, <제2안> 9억 1,500만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토록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사업장 공표를 명령하는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과 관련해서는 35개 유통점 중에서 1회 위반 33개 유통점, 2회 위반 2개 유통점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30~50%를 가중하였고, 그중 10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서 30%를 감경하는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가요금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에 해당하는 4개 중소형유통점에 대해서는 2개 유통점에 각각 1500만원, 2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사전승낙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조사자료의 제출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일단 뒷부분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반행위 A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위반행위 B의 경우 <제1안>이 KT와 LGU+에 대해 각각 1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2안>이 부과를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은 뒤에 과태료 부분들은 이견이 없고, 위반행위 B에 대해서는 앞에 온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신규모집금지를 부과할지 말지와 연계해서 판단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만약 신규모집금지를 <제1안>으로 갈 경우 과징금 부과를 <제2안>으로 면제해 주는 쪽으로 가고, 아니면 신규모집을 <제2안>처럼 제외한다면 피심인②, ③의 위반행위 B에 대해서는 <제1안>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이통 3사의 전용 온라인과 법인 온라인 영업부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단말기 유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편법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판매 부분입니다. 조사를 통해 이통사의 판매 장려금을 기초로 불법페이백 방식의 공시지원금 초과지급과 부당한 차별 지원금 지급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한 사안은 KT와 LGU+의 고가요금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행위입니다. 6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3개월이나 6개월 사이의 의무사용을 강제하는 영업방식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LGU+와 KT가 이에 대해 고가요금제 권유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조금 전 사업자 의견진술에서는 이에 대해 인정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고가요금제의 부당 권유 여부의 판단은 고가나 저가요금제 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 격차의 높고 낮음만이 아니라 불법지원금 지급과 고가요금제 사용의무를 연계시켜서 권유했는지 여부를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피심인들은 유통점들의 장려금 가로 채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소명했으나 차별적인 장려금, 요금제 변경 제한, 변경 시 환수 등의 정책은 유통점들이 특정 요금제를 부당하게 권유하도록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가요금제 부당 가입 권유는 영업점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후 조사 방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천적인 해결방안은 통신사가 요금제 간 차별을 두는 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번에 상생협약안을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통사가 시정조치안에 따라 특정 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제출하고, 또한 사무처는 사업자가 제출한 실행방안에 대해 이행점검을 서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해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영업방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쟁점은 시정조치안으로 보고된 7일간의 신규모집금지 부과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처에서 영업정지를 포함한 고강도 규제방안을 건의하여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를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잉 처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여겨 지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A에 대해서 저는 원안대로, 그리고 위반행위 B는 <제1안> 1억원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영업정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이번 조사가 특수 온라인 영업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과거와 같은 시장 전반의 과열이나 이용자 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5G 시장의 상용화와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 3사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었음에도 특정한 유통채널에서 과도한 장려금이 집행되어 페이백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 상황은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법

행위를 통한 경제력 이익을 일부 환수하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의 정책과 사전승낙제의 관리 강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에 주력하는 것이 규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나>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안은 모두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도 앞서 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7일간의 신규모집금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5G 시장 활성화를 앞두고 조금 과도한 제재가 아닌가, 특히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무처의 고려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신규모집금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해 주되, 앞서 위반행위 A, B에 대해서는 신규모집금지를 우리가 제외해 줬으니 시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봐서 다시는 부당행위가 없도록 1억원씩 부과하는 데 대해 <제1안>을 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려금을 지급할 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형사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가입유형별 장려금의 차별적 지급이 곧바로 차별적 지원금 지급으로 연결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서 장려금을 초과 지급하겠다고 우리가 직접 지시한 것을 적발한 것 외에는 그것을 유추해서 이것은 지급으로 유도한 행위로 본다, 이렇게 선불리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마케팅이라는 것이 각 기업 간 사활을 건 전략인데 그것을 너무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조사를 할 때 증거수집 등을 해서 보강에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사무처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도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것은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통 3사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또 5G 관련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 분 위원님들 의견과 달리 저는 위반행위 B에 대해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느냐, 경미한 위반행위로 보느냐인데, 저는 이것을 경미한 위반행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피심인②, ③ KT와 LGU+는 1억원 부과를 제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이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뒤따라가서 조사를 한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하고 위원회가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조사할 필요도 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건 조사가 된 것이고, 물론 피심인들이 아까 의견청취 과정에서 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상생협의체도 구성하는 것들을 봐서 저는 신규모집

금지는 제외해 주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위반행위 B에 대해서만 경미한 위반행위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수를 따라야 합니까? 신규모집금지는 다 반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나머지 표철수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만 조금 다른데….

○ 김석진 부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경미한 위반행위라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과기준 금액에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사무처에서도 위반행위 B에 대해서는 중대성 약한 위반 행위, 가장 낮은 벌칙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맞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경미한 위반행위라는 제재 부과 범위는 없지요?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중대성 약한 위반행위가 3억원 이하가 원래 위반율이 40% 미만인 경우 구간별로 잘라서 하는데 1,300건, 1,100건 정도를 비율로 따져 보면 1억원 비슷한 수준 금액입니다. 몇 천만원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1억원으로 최소 금액으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규정에 있는 정확한 용어이고, 저희가 <제2안>을 만들 때 유통점이 적고 위반행위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로 경미한 위반행위를 들어서 부과를 제외하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미한 위반행위라는 것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표 위원님 말씀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부과하지 않는 안이군요?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하나의 이유로서 그렇게 단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경미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표 위원님 말씀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사무처에서는 판단하였지만 이런 부분은 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으로 제가 다시 입장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저는 경미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대성에 관해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그리고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또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경미함'이라는 것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위반행위 B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 부과가 제외된다면, 굳이 위반행위 A와 B로 나눈 구분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시정조치 이외에 부과안도 저는 1억원으로 <제1안>대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신규모집금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사업자들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서 이용자들을 차별하고 차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고가요금제에 대해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가 법 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말고 강력하게 법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합니다. 4월 초쯤에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용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한다고 하는데 5G 시대에도 이렇게 이용자들을 차별한다거나 또 고가요금제에 대해 별도의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서비스 경쟁을 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이통사와 유통망들이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신규모집금지라는 제재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고가요금제 부당 가입을 유도한 피심인②, ③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미한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수준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여기 안전에 보면 저희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조사도 했고 유통점주의 진술도 확보하는 등 분명히 위법하다는 근거를 가지고서 제제안을 올렸습니다. 물론 유통점 수는 각각 2개, 3개이고 또 건수도 1,000여건이지만 제가 앞서 다른 제제안과 같이 고려하자고 했을 때 최소한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허 옥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해서 1억원의 과징금 부과하는 쪽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제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원안이 <제1안>과 <제2안>이 있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1억원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신사업 경쟁에서 지원금 등에 의한 영업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은 본질적인 사업경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진정한 의미의 사업경쟁은 기술개발이나 요금인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또 기존 서비스의 개선 등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 가지고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많이 유도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부터 통신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하고 요금제도 서로 낮춰가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이러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고가요금제를 권유한다든지 거의 강요한다든지 이런 식의 영업형태를 통한 경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이런 의결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사업자에게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여기에서 원안이 <제1안>, <제2안>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피심인①, ②, ③에 대한 시정조치는 원안대로 시정명령과 신규모집금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위반행위 B에 관련해서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3:2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는 모두 원안대로 진행된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이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결된 것입니다.

**나.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19-14-072)**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동석 지상파 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주)삼라가 신청한 (주)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을 의결한다’입니다. 승인조건은 먼저 (주)울산방송의

재무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울산방송의 (주)삼라 및 SM그룹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금지할 것, 둘째 방송법 제8조제3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현재 10조원)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삼라가 신청한 (주)울산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변경승인 신청 현황입니다. 먼저 신청 개요입니다. (주)삼라는 (주)울산방송의 주식 180만주를 한국프랜지공업(주)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삼라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12월 3일 (주)삼라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었고, 올해 1월 21일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셨습니다. 3월 7일부터 8일, 3월 14일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운영기간을 1일 연장하였습니다. <4>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방송·미디어, 경제·경영·회계, 법률 등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장은 고삼석 위원님이 맡아주셨습니다. <5> 심사 항목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였고, 심사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주)삼라의 (주)울산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삼라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울산방송을 지원하되, 보도·제작·편성에 개입하지 않는 등 방송사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주)삼라는 (주)울산방송의 방송전문 경영인 1인 대표이사 체제의 유지,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의지가 충분하고, 셋째 (주)삼라는 법 위반 사항이 없으며 사회적 평판이 비교적 양호하고, SM그룹 내 공익재단을 통해 꾸준히 사회환원을 실시하였으며, 넷째 (주)삼라는 최근 3년간 이익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므로 (주)울산방송의 최대액출자자로서 재정적 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삼라는 (주)울산방송의 자체심의제도 강화,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제작·편성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가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아래 2가지 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삼라는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의 다수 존재하므로 (주)울산방송의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금지할 필요, 둘째 SM그룹의 자산총액은 약 9조 600억원으로 향후 자산 총액이 방송법상의 소유제한(현재 10조원 이상) 규제에 위배되지 않도록 약속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처는 (주)삼라의 (주)울산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향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경승인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며, 조건은 이미 보고해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8>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이후 (주)삼라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 그리고 검토의견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울산방송이 수년 동안 적자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지요. 아직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인 한국프랜지공업(주)에서 사실상 울산방송의 적자 상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울산방송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도 저희가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울산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대주주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지적사항들 같은 경우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SM그룹의 회장을 특수관계인으로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청취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주시지요.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옥 상임위원

- 먼저 심사 운영기간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장 고삼석 위원님과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1월에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할 때 상임위원님들 모두가 최대주주가 기업 이익 추구를 위해서 언론사인 (주)울산방송을 인수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SM그룹에 지역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추구, 즉 그룹의 시너지를 위해서 언론사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과정에서 이런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도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삼라가 (주)울산방송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의결하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승인조건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주)울산방송의 재허가 심사 때 이번 승인조건 사항을 재허가의 부관사항으로 부가해서 방통위가 상시점검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지역민방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겠다고 내놓은 곳도 있고 또 곧 시장에 내놓아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재정이 굉장히 튼튼한 회사가 울산 민방을 인수하게 된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행이다, 재정이 튼튼해야 결국은 프로그램 제작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된 일인데, 단지 하나 최대주주가 바뀌어 과도하게 보도·편성·제작에 관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없도록 (주)삼라에서도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전제에서 이 안건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부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이 또 직접 심사해 주셔서 꼼꼼하게 잘 점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민방의 어려운 경영 악화로 인해 다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수년간의 적자에 허덕이는 울산방송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다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21년간 울산방송이 지역민방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SM그룹은 지역에 연고가 없는 기업으로서 지역민들이 너무 기업의 이윤만 생각하고 덱석 인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유·경영이 과연 어떻게 분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방송의 제작·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 과연 최대주주의 영향력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들 주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 자체 제작 투자액도 나와 있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지난번 간담회 때 요구하였지만 SM그룹과 언론노조 간 체결된 합의서를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조목조목 SM그룹에서 약속했었습니다. 조인식까지 다 하였기 때문에 공적인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가칭)UBC미래발전위원회를 노사 간 구성해서 전 사원 간담회도 열고, 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요청이 들어가면 최대주주가 또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합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그것을 조속히 약속대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SM그룹이 방송사와 언론사를 아마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특히 지역민방인 경우는 지역성 구현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자본이 넉넉한 기업주가 방송사를 소유할 때 따르는 여러 가지 공공성·공익성 또 지역성 구현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방송사, 언론사를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미래발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인조건으로 나와 있는 2가지는 적절히 잘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는 없습니다만 지역민방의 대주주 변경이나 재승인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 말에는 지역민방들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논의했던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인데 이것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 보도와 편성에 대해 최대주주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보고, 또 책임을 구현하는 방법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UBC 울산방송의 미래발전을 위한 (주)삼라와 울산방송 노조가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향후 새로 선임되는 경영진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체는 최대주주인 SM그룹입니다. 즉, 적자구조에 대한 경영의 정상화 방안, 향후 투자 및 신사업 추진방안, 지역지상파방송사로서 지역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 개발방안에 대해 SM그룹이 경영진을 통해 그 입장들을 회사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체는 SM그룹이라는 대주주입니다. 결국은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삼라그룹의 역할에 대해 울산방송의 노조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책임을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구현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Key사 역할을 하는 서울에 있는 지상파 3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영방송은 제외입니다만 SBS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소유와 경영분리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편성채널 4개사를 보면 최대주주인 소위 말하는 1대 주주가 종편의 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특수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이 회사 대표나 또 제작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민방을 보더라도 일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넘어서 이번 경우처럼 적자가 나더라도 대주주가 아예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지역민방에서는 대주주가 노조와 임금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공영과 민영의 분리라면 모르겠지만 민영인데 지상파 그리고 지상파에서 Key사 역할을 하는 서울에 있는 지상파와 지역민방, 그리고 종편들이 이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각각으로 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 입장을 취하기가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정책의 명확성 원칙을 세운다는 전제하에서도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목표와 방송사들의 경영 현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정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지금 KBS, MBC, EBS 등 중앙에 있는 지상파들도 모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영 미디어랩인 KOBACO의 광고판매 실적을 보면 지상파의 광고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7.7%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민방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SBS는 미디어크리에이티브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미디어랩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감소율은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민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처럼 건실한 대기업이 인수를 해준다면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지금 여타의 지역민방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역민방들의 대광역화나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보면 방송법상 지역민방 소유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확실하게 시작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역성 구현을 1차적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민방들이 대광역화한다면 지역방송, 특히 소규모의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매체를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지역방송 정책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울산방송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이러한 사안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방금 고삼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 방통위가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안들이 법령을 손을 봐야 하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삼라가 경인일보의 최대주주였다가 지금 2대 주주지요? 맞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경인일보 최대주주였을 때 경인일보의 제작이나 편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대 주주였을 당시에 한 번도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 기업이라면 좀 더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송언론과 신문언론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해서 앞으로도 울산방송이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가는지는 사무처에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울산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에서 최대주주가 지녀야 할 조건과 사실 그리고 약속 이행의 자세 등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심사위원과 위원장을 맡아주신 고삼석 위원님의 치밀함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울산방송 건은 이런 식으로 좋은 최대액출자자가 나와서 다행인데, 아까 고삼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또 표철수 위원님도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곳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할 텐데 이것이 선의의 또는 의욕이 있는 새로운 출자자를 기대하는 것만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는 방송산업이 계속, 특히 광고를 수익모델로 하고 있는 방송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의의 새로운 출자자가 나오기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선의의 출자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까지나 그런 식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특히 지역의 지상파들 MBC가 됐든 민방이 됐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님께서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인데 우리가 늘 지적해 오듯이 지금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방송의 수익모델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시대에 현재와 같은 방송권역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부터, 그 수익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어느 정도가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정책기구로서 미리미리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도 바로 측면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정책기구로서 방송사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좋은 정책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14-073)

#####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 주문입니다.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을 삭제하고, 유사항목을 통합하며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3> 추진 경과로는 고시개정안에 대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관계부처 의견 조희 등 행정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내용입니다. 이전에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항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사 항목을 통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 평가 항목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배점 간격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검토 기한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예고안에 대해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항목 배점 축소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으로는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을 위해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배점을 현행 45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하는 안이었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안동MBC와 지역방송협의회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제작편수가 많지 않아서 편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개정안인 100점으로 확대하는 안을 50점으로 축소하고 축소한 배점을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기관 등과의 협력실적’ 부분에 배분해 달라는 요청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배점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특정 방송사의 특별한 사정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는 지역성 구현을 중요 항목으로서 배점을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므로,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 내 기관 등과의 협력실적’ 두 개의 지표에 대해 배점 간 차등을 통한 우선 순위 부여보다는 항목 간 균형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와 고시 시행을 통해 6월부터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옥 상임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진 부위원장님도 같이 참여하였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의 제한기준」을 평가 목적에 맞게 항목을 개선하고 사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주요 평가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배점을 간소화하였으며, 유사 항목을 통합하고 중복 평가항목은 삭제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을 위한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배점을 현행 45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방송 한 곳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방송의 기본적인 책무가 지역성 구현입니다. 따라서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으로서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배점을 높이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반대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예고안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은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맡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또 그 사이 일부 조금 불합리한 점들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개선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전까지 위원장을 맡아주신 허 욱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 제출 의견에 대한 견해까지 다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따로 보탬 말씀은 없고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하 종편PP에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새로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 편성비율을 하위 고시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주요 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부과 제9조제1항 개정 및 제6호 신설입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MBC·SBS와 동일하게 매 반기 30%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편PP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부과 제9조제2항 개정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주시청시간대, 즉 평일 19시부터 23시, 주말 공휴일 18시부터 23시 시간대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매 반기 10%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후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해서 최종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올린 후에 시행일인 6월 25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종편들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규정 30% 이상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예. 지금 현재 대부분 40% 넘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 초과하고 있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개정하는 내용이 실제보다 뒤따라가는 모양이라서 저는 원안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늦었지만 매체 간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하는 차원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번 안건은 출범 이후에 외주제작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규제를 받지 않았던 종합편성PP에게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신설하는 고시안입니다.

중편PP와 지상파방송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정립하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주 제작사에게 편성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이미 중편PP사가 시행하고 있고, 허가조건의 부관사항으로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중편PP 입장에서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정예고 때 사업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중편들이 우리가 제시한 다른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30% 비율 이상 초과해서 지키고 있으니까 30%로 우리가 규정하더라도 규제라고 여기지 않고 반발은 없지요?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정예고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만큼 외주제작사의 역할이나 또 외주제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입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령을 우리가 정비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끔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는 사업자는 당연히 외주제작비율을 늘려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상생방안, 외주제작이 그만큼 비중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혹시나 불공정한 것이 없는지를 덩달아 함께 들여다봐야 하지 않느냐는 추가 과제가 또 따로 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내부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6분 폐회 】